(재)산림힐링재단 종합시설관리용역 계약 특수조건

제1조(목적) 이 (재)산림힐링재단 (이하 “재단” 이라 한다) 종합시설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 (이하 “특수조건” 이라 한다)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(이하 “일반조건” 이라한다)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3조(신의성실 의무)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 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계약이행 및 관리책임)

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 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“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” 를 다하여야 하며,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본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, 보안유지,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,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, 투입인원의 위생관리, 안전관리,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.

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·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, 근로기준법, 산업재해보상법,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

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

제5조(용역수행)

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, 사업수행계획서, 용역책임자와

용역 인력의 신원조회 결과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본 재단에 제출,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본 재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,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본 재단은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 제시, 문제점 지적,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④ 원할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재단 근무자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에 별도 처우를 할 수 있다.

⑤ 본 재단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 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6조(인력의 투입 및 교체, 업무감독)

① 인력의 투입은 운영계획서의 시설별 운영계획에 맞게 투입 운영하되, 당해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하여 운영한다.

② 인력을 투입 또는 충원 배치는 본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치 운영한다.

③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.

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본 재단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본 재단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.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본 재단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 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,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본 재단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⑤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,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2조를 준용한다.

제7조(산업안전·보건관리) “을”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① 사업장(재단)에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를 두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장(재단)에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비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④ 분기 1회 이상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야야 한다.
⑤ 상기 사항의 실시결과 및 변경사항을 “갑”에게 서면 통지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자료제공 및 기술지원)
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본 재단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계약상대자는 본 재단이 제공한 자료를 본 재단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.

제9조(편의제공 및 경비부담) 본 재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(탈의실), 물품창고, 전력, 전화,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.

제10조(과업내용의 추가, 변경 및 해석)
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
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.
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본 재단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“일반조건” 제45조에 규정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다.

제11조(용역대금 조정지급)
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용역인력 결원 시 즉시 인력을 충원하여야 하며, 근무인원의 결원이 월 총 근무총원의 1/100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경비는 용역대금에서 삭감하여 정산 지급한다.
② 용역인력의 결원 및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재단 시설관리유지에 현저한 손해 발생 시 용역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)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용역대금정산)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본 재단에 용역이행 대금을 청구하고 본 재단은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14조 (계약해지)

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였을 때
2. 재단 내 문서 또는 물품을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
3.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상당한 우려가 있을 때
4.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입혔을 때
5.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 요구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을 때

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시설관리 용역업무를 재단 관리부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③ 재단은 시설물의 인계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청사 외부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5조 (손해배상책임)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

1. 시설물에 손실을 입혔을 때
2. 재단 내 근무하는 직원 및 출입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
3. 재단 내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
4.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・정전・단수・도난 등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

제16조 (근로자 신분 및 적정임금 보장 등)

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,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등 노동관계법령, 직업안정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행할 수 없다.

② 계약상대자는 본건 계약체결일 현재 본 용역 대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.

③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

여야 한다.

④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(기본급+연차수당+상여금)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⑤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인 재하도급을 금지한다.

제17조(타 법령의 준용 등)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본 재단의 당해 용역의 개별계약에 관한 법령, 예규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.